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1호	2010. 3. 8.
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16호	2012. 8.10.
일괄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20호	2013.10.21.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30호	2015.10.19.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57호	2022. 5.17.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훈령 제62호	2023. 7. 7.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훈령 제5호	2025. 2.25.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훈령 제5호	2025. 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제3조(객원연구원의 임용)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연구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1.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삭제 2022.5.17.>
3.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21.>

② 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③ 객원연구원은 임용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용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제4조(객원연구원의 연구수행) ① 객원연구원은 임용기간 동안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임용기간 종료 전에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② 객원연구원은 연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연구원 직원 대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③ 원장은 필요시 객원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④ 객원연구원이 근무기간 중 외부연구 용역사업 참여, 「통계연구」 게재용 논문의 심사, 각종 학술회의에서의 발표, 토론 및 사회, 연구 결과의 간행물 발간 등 연구원의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사안별로 정해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단가는 “국가데이터연구원 자문수당 등 관리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제5조(객원연구원의 복무 등) ① 객원연구원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② 객원연구원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객원연구원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와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연구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시 원장은 통계법 제39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21.] <개정 2023.7.7.> <개정 2025. 2. 25.>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에 의

한다. [중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3. 10. 21.] <개정 2025. 2. 25.>

부칙 <2010. 3. 8.>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10.>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객원연구원 임용계약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의 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과 객원연구원(이하 "임용대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 주소	전화번호	비 고

2. 임용대상자의 임무는 분야에 대한 연구로 하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로 한다.

3. 임용대상자의 근무장소는 로 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지휘를 받는다.

4. 임용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국가데이터연구원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객원연구원은 임용기간 동안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고, 임용기간 종료 전에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사업 실적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임용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사업 실적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사업 실적의 판권과 본 연구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국가데이터연구원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결과 제공시 임용대상자의 명의를 밝혀야 한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5. 임용계약 후 임용대상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 임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의 제규정에 의한다.

20 년 월 일

임용권자 : (주소)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13
(성명) 국가데이터연구원장 ○ ○ ○ (직인)

임용대상자 : (주소)
(성명) ○ ○ ○ (서명)

서 약 서

서 약 자 : (성명) ○ ○ ○ (서명)
(소속)

본인 ○○○은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의 관리 하에 연구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연구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비밀사항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 시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및 국가보안법에 의거 어떠한 제재사항도 수락할 것을 서약합니다.

20